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전과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1. 의결주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G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28GHz 주파수 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GHz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단가 감경 (안 별표8)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6.5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단가를 200원으로 적용

나.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 서만 28GHz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자가

망 시설자의 신호계수 조정(안 별표10)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시설자에 대해서는 0.0017의 신호계수를 적용

다.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GHz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교육·연구 목적 비영리법인의 무선국 전파사용료 면제(안 제89조제1항제 8호 신설)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시설자로서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개설한 무선국

별표8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비스별 단가표

서비스		단가
이동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휴대인터넷		가입자당 분기별 1,200원
무선호출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주파수공용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위치기반서비스		가입자당 분기별 50원
무선데이터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30원
위성휴대통신	음성 및 데이터	가입자당 분기별 500원
	데이터	가입자당 분기별 80원

비고

- 이동통신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로서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및 아이엠티이천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6.5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이동통신 단가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당 분기별 200원의 단가를 적용한다.**

2. 위 서비스별 단가표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관리·제어 등을 위해 사물의 상태나 사물 주변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만을 송신·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휴대인터넷,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위치기반서비스, 위성휴대통신에 대해서도 무선데이터통신 단가를 적용한다.

별표10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선폭계수

주 파 수 대		계 수
U H F	300MHz 이상 960MHz 미만	1.5
V H F	28MHz 이상 300MHz 미만	1.3
중단파 이하	28MHz 미만	1
준마이크로파	960MHz 이상 3GHz 미만	0.1
마이크로파	3GHz 이상 10GHz 미만	0.0234
	10GHz 이상 30GHz 미만	0.0034
밀리미터파	30GHz 이상	0.0004

비고

1.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선폭계수에도 불구하고 0.0017의 계수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p> <p><u><신 설></u></p>	<p>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① -- ----- ----- -----.</p> <p><u>8.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개설한 무선국</u></p>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 락 처	(044) 202-4923